

화순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

심 사 보 고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96. 6. 20 화순군수
- 나. 회 부 일 자 : 96. 6. 22
- 다. 상정일자 : 96. 7. 1(제45회 임시회 제1차총무위원회)

2. 제안 설명요지

- 가. 제안설명자 : 보건소장 이 대 현
- 나. 제안이유
 - . 통합보건사업의 전반적인 지휘감독 및 운영체계 확립을 위해 보건지소의 관리운영 규정(보건복지부 훈령 제666호 93. 3. 1)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동조례 폐지
- 다. 주요내용
“폐 지”

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김재휴)

- . 동조례 폐지안은 보건지소의 지휘감독 및 운영체계 확립을 위해 보건복지부의 보건지소 관리 운영규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폐지하는 조례로 입법예고 및 조례규칙 심의회 의결등 상위 법령에 저촉되거나 절차상 특별한 문제점이 없음.

4. 질의 답변 요지

“생 략”

5. 토론요지

“생 략”

6. 심사결과

『원안가결』

7. 첨부 : 화순군보건지소운영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

안건번호 : 2001년 10월 27일 제 45회 본회의 제2차
제안자 : 화순군

제안일자	2001. 10. 27
제안번호	2001-10-27-45-2-10

안건명 : 화순군보건지소운영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

제안일자 : 2001. 10. 27

제안자 : 화순군

제안목적 : 화순군보건지소운영협의회조례는 화순군보건지소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건지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고자 제정되었으나, 보건지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보건법」 제45조 및 「보건지소규칙」 제12조에서 규정하고 있어, 「화순군보건지소운영협의회조례」는 중복규정이므로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폐지할 것을 제안함.

안건내용 : 화순군보건지소운영협의회조례 폐지

안건처리과정 : 2001. 10. 27. 제45회 본회의 제2차 회의에서 10표 찬성, 0표 반대, 0표 기권으로 가결됨.

안건처리결과 : 원안가결

화순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1996 . 6 . .
제 출 자 : 화 순 군 수

1. 제안이유

보건지소의 관리운영규정(보건복지부 훈령 제666호)에 의거 보건지소운영지원 협의회를 폐지토록 규정되어 있어 동조례를 폐지하고자 함.

2. 폐지근거

보건복지부 훈령제666호('93. 3. 1.)

3. 주요골자

통합보건사업의 전반적인 지휘감독 및 운영체제 확립을 위하여 화순군보건지소 운영지원협의회 조례를 폐지함

화순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

화순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는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 부터 시행한다.